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정치 구현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태모 의원 등 6명
제출연월일	2026. 2. 9.

논산시 출산장려 ·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16호
----------	------

발의연월일: 2026. 2. 9.

대표발의자: 이태모

공동발의자: 민병춘, 서승필,
홍태익, 김종욱,
허명숙

1. 제안이유

“출산장려금”의 명칭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공동체적 축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출산 지원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여 시민의 공감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등)

나. 용어 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조례안예고: 2026. 2. 9. ~ 2. 14. (5일간)

□ 개정조례안

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를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려금”을 “축하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장려금 기준 등)”을 “(축하금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려금”을 “축하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장려금”을 “축하금”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장려금 신청 등)”을 “(축하금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장려금”을 각각 “축하금”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장려금”을 각각 “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려금의”를 “축하금의”로, “장려금 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축하금 신청·접수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장려금”을 각각 “축하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장려금”을 “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려금을”을 “축하금을”로, “장려금 지원신청대장”을 “축하금 지원신청대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장려금신청서”를 “축하금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이태모 의원 등 6명

[별지 제1호서식] (제7조제2항제1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7조제2항제1호 관련)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에 [] 아니오	
	배우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금부 (출산 본산시)	[] 출산축하금 지급	[출산 축하금 거주기간 확인] ※ 해당란에 체크 적합, 3개월 후 적합, 부적합			
		▶ 거주기간 :부(), 모(),기타() : 20 ~ 20			
		▶ 신생아 출생일 : 20			
		[] ()째 자녀(이름 :) [] 금액 (만원)			
		[] 신청인 이름 : /신생아와의 관계			
		[] 지급대상(부, 모, 아기) 이름 [] 은행/계좌번호: ※ 예금주 = 부 또는 모, 아기			
※ 6조⑤항 추가지원		1차 신청일: 20 년 월 일(재/ 만원) / 2차 신청일: 20 년 월 일(재/ 만원)			
[] 노산맘산모꾸러미		※ 수령지 주소 :			
[] 다자녀 가저귀 지원 2022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회) ☞ 다자녀 이상(2022년 이후 둘째이상 출산장려금 대상자 ☎ 041) 746-8063			
[] 유축기 무료대여		(출산 후 1개월간 대여) ☞ 사전 예약제로 보건소 전화 문의 ☎ 041) 746-8064, 8065,8066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1. 국민출생 여부 : [] 에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에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아동수당		[] 아동수당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저소득층 가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본지원대상	[] 가저귀 ([]국기초 []차상위 []한부모 []기타) [] 조제분유([]산모의 사망·질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기타)			
			국민행복카드신청	[] BC카드 (은행) ※ IBK기업, 농협, SC제일, 경남, [] 광주, 대구, 우리, 전북, 신한, 제주, KB국 [] 우체국, 부산, 수협, 하나은행 신청 [] 가능 []민 [] 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신규 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를 선택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산 시 장 귀 하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 엽산제 등 태배 수령의 경우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임신정보 작성이 불필요합니다.

임신 정보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
	다태아 구분	[] 단태아 [] 다태아		

※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가족사항” 란 작성

가족 사항	임산부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주소 기재)	세대주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국민행복 카드신청	[] BC카드 (은행) ※ IBK기업, 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부산, 수협, 하나은행 신청 가능			[] 국민 카드	[] 롯데 카드	[] 삼성 카드
		※ 신규 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를 선택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임신확인일 기준 19세 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 엽산제		도로명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다를 경우 작성)					
	[] 철분제	수령 방법	[] 직접 수령 [] 태배 수령					
	[] 모자보건수첩							
	[] 맘편한KTX	멤버십 번호	※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임신확인일 기준 19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을 별도로 신청 가능 합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 단태아 ([] 인력1명 [] 인력2명) [] 삼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 다태아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신청요건 예외 지원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						
	서비스제공장소	[] 자택 [] 기타						

<p>맘편한 KTX</p>	<p>1.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맘편한KTX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 철도공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p> <p>※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맘편한KTX는 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철도공사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p> <p>3. 맘편한KTX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이 중지됩니다.</p> <p>[]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p>
<p>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p>	<p>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영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 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2.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환급은 보건소 1층 건강증진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합니다.</p> <p>[]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p>
<p>가족배려 자동차 표지</p>	<p>1. 가족배려자동차 표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가족배려자동차를 신고·등록해야 합니다. 신고·등록 되어 있지 않은 임신부 또는 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 가족배려자동차 표지를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간: 5년, 제공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분만에정일-임신부에 해당, 차종, 차명, 차량번호, 차량 소유주)하여 관할 보건소에 가족배려자동차를 신고·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가족배려 자동차 표지는 임신부 또는 7세 이하의 아동이 탑승한 차량 이용시 사용가능하며 관내 가족 배려 주차장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p> <p>3. 발급 및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보건소(2층 모성보건실)로 수령해야합니다.</p> <p>[]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p>
<p>임산부 엠블럼 지원</p>	<p>1. 임신부 엠블럼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임신부로 신고·등록되어야 합니다. 신고·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신부(기 등록된 임신부는 해당 사항 없음)가 임신부 119 급급대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보유 기간: 5년, 제공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분만에정일, 다테아 구분)하여 관할 보건소에 임신부로 신고·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한 명당 엠블럼 한 개로 제한합니다.</p> <p>[]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p>
<p>초모맘 출산준비 교실</p>	<p>1. 사전신청으로 진행되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2. 신청은 논산시보건소(041-746-8063)로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p> <p>3. 만들기 재료 배송 등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주소와 연락처가 강사에게 전달됩니다.</p> <p>[]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p>
<p>맘(MOM)편한 우리집 산후 큰아이 등 가사돌봄 지원</p>	<p>1. 맘편한 산후 큰아이 등 가사돌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해야합니다.</p> <p>2. 맘편한 산후 큰아이 등 가사돌봄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장소가 논산시이어야합니다.</p> <p>3. 최대 세명까지 지원합니다.</p> <p>4. 재발급 불가합니다.</p> <p>5. 쿠폰 일수, 인원수 변경 불가합니다.※ 일정 추가 변경 시 제공기관 지침에 의해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p> <p>6.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보건소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5. <u>“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u>“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시에 하는 경우에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p> <p>6. ~ 11. (생 략)</p> <p>제4조(출산장려사업) 시장은 임신·출산·양육지원과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u>출산장려금</u> 지원</p> <p>2. ~ 9.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5조(지원대상) ① <u>장려금</u>의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전 부</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u>”----- ----- ----- ----- ----- ----- -----.</p> <p>6. ~ 11. (현행과 같음)</p> <p>제4조(출산장려사업) ----- ----- -----.</p> <p>1. <u>출산축하금</u> --</p> <p>2. ~ 9.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대상) ① <u>축하금</u>----- ----- -----</p>

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아 및 부 또는 모가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6조(장려금 기준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 100만원 이내
2. 둘째아 200만원 이내
3. 셋째아 300만원 이내
4. 넷째아 400만원 이내
5. 다섯째아 이상 700만원 이내

<신설>

③·④ (생략)

⑤ 장려금 신청 이후, 신청 기한 내 신생아의 출생순위가 변동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⑥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축하금 기준 등) ① -----
----- 축하금 -----
----- 지원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축하금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장려금 신청 등) ① 읍·면

·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장려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방문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에 의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삭제

③ 장려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제5조제3항의 경우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 장려금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전산망 자료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신생아의 주소, 출생

제7조(축하금 신청 등) ① -----

----- 축하금 -----

-----.

② ----- 축하금 -----

-----.

1. (현행과 같음)

③ 축하금-----

-----.

제8조(지원절차) 축하금-----

1. -----

일, 출생순위를 확인하고, 장려금 신청·접수대장(별지 제 2호서식)에 기재한다.

2.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려금의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면 매월 1일 전월 장려금 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논산시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3. 보건소장은 매월 장려금 신청·접수대장을 받아 당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4. 보건소장은 장려금 입금 후 지체 없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입금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5. (생략)

제13조(환수조치) 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자가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조개정 2016.9.20.)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

----- 축하금 -----

-----.

2. -----
----- 축하금의 -----

----- 축하금 신청·접수대장-----

-----.

3. ----- 축하금 -----

-----.

4. ----- 축하금 -----

-----.

5. (현행과 같음)

제13조(환수조치) ① -----
----- 축하금 -----

-----.

② ----- 축하금을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